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90
----------	-------

발의연월일 : 2025. 11. 11.

발 의 자 : 황정아 · 권향엽 · 박지원
김남근 · 김 윤 · 윤건영
장철민 · 양부남 · 이광희
허성무 · 박희승 · 정진욱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함)은 근로소득으로,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는 연 7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종업원등 또는 교직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전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어목 중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라목 본문 중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어목 및 같은 조 제5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과세소득)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3. ----- ----- -----
가. ~ 서. (생략)	가. ~ 서. (현행과 같음)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 <u>직무발명보상금</u> ”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어. ----- ----- -----한 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저. · 처. (생략)	저. · 처.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5.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원이 퇴직한 후에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거나 대학의	라. ----- ----- -----

